

무배당 늘당신결에사랑보험0904 상품요약서

◎ 무배당 늘당신결에사랑보험0904 Q&A

Q) 보험가입시 보험나이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Q) 이 상품의 보장개시일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상품의 보장개시일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합니다. 단, 암 진단(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제외)에 대해서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Q) 이 상품의 담보 중에 가입 1년 이내에 발생하면 50%삭감 지급하는 담보와 면책기간이 있는 담보가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이 상품의 담보 중 가입 후 일정기간 보장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담보와 가입 1년 이내 진단확정시 50%삭감 지급하는 담보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담보명	면책기간	가입1년 이내 발병시 50%삭감지급
암진단	90일	○
뇌출혈진단	×	○
급성심근경색진단	×	○

Q)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나요?

A) 근로소득자가 자신, 배우자,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시 연간 납입한 보험료중 1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해약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 보험가입자격 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1) 상품의 특이사항

- ① 예정이율 : 4.0%(연복리)

②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납입주기
10년	10년	월납, 연납

③ 만기환급금 : 기본계약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2%

2) 가입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① 가입대상 : 20세 ~ 50세(보험나이기준)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직무, 기타 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1)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내역

<기본계약>

구 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지급금액
만기환급금	보험 만기시	-	100만원
상해사망 후유장해	사망	상해로 사망시	5,000만원
	고도후유장해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5,000만원
	일반후유장해	상해로 3~79% 후유장해시	5,000만원×후유장해지급률
신주말 상해사망 후유장해	사망보험금	신주말 상해로 사망시	5,000만원
	고도후유장해	신주말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5,000만원
	일반후유장해	신주말 상해로 3~79% 후유장해시	5,000만원×후유장해지급률
골절화상 치료비	진단자금	골절이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20만원(1사고당)
	수술비	골절이나 화상으로 수술시	50만원(수술1회당)

주1) 신주말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주2) 상기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선택계약>

구 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지급금액
상해의료비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한 의료실비 (180일 한도)	1,000만원	1,000만원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50% 보상

암진단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일반암진단을 지급한 경우 담보 소멸)	2,000만원	1. 일반암 : 2,000만원 2.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 : 400만원 ※ 1년이내 진단시 진단자금 50%지급
뇌출혈진단	뇌출혈로 진단 확정시 (1회 지급)	2,000만원	2,000만원 ※ 1년이내 진단시 진단자금 50%지급
급성심근경색진단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시 (1회 지급)	2,000만원	2,000만원 ※ 1년이내 진단시 진단자금 50%지급
질병입원의료비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의료실비 (365일 한도)	3,000만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단, 병실료차액의 경우 50% 해당액)의 100% 해당액을 3,000만원 한도로 보상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40% 해당액
질병통원의료비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의료실비 (365일 한도)	10만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과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조제비 및 약사조제료 비용에서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해당액을 통원1일당 10만원한도로 보상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해당액
상해입원일당	상해로 4일 이상 입원시 (180일 한도)	2만원	3일초과 입원1일당 가입금액 전액
질병입원일당	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시 (180일 한도)	2만원	3일초과 입원1일당 가입금액 전액
형사합의지원금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	5,000만원	1. 피해자 사망시 : 가입금액 전액 2. 피해자 42일이상 진단시 : 가입금액*12%

	는 진단을 받거나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3. 피해자 70일이상 진단시 : 가입금액*20% 4. 피해자 140일이상 진단시 : 가입금액*40%
별금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받은 별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2,000만원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별금액으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별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
방어비용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소)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100만원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면허취소위로금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만원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면허정지위로금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정지 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 (60일한도)	1만원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면허정지기간 : 행정기간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여 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

주) 상기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2)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① 보장개시전 사고

- 보장시기 및 종기

회사의 보장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그러나, 일반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에 시작하며 마지막날에 끝납니다.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등(기타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③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④ 이 상품의 「상해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는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다수계약이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을 의미합니다.

3. 보험료 비교표

(상해1급, 40세, 10년만기, 10년납, 월납, 단위 : 원)

구 분		가입금액	남자	여자
기본 계약	상해사망후유장해	5,000만	15,590	12,650
	신주말상해사망후유장해	5,000만		
	골절화상치료비	50만		
선택 계약	상해의료비	1,000만	5,330	6,210
	질병입원의료비	3,000만	8,240	10,930
	질병통원의료비	10만	1,810	3,110
	암진단	2,000만	5,080	7,100
	뇌출혈진단	2,000만	1,460	1,020
	급성심근경색진단	2,000만	760	300
	형사합의지원금	5,000만	4,000	4,000
	벌금	2,000만	240	240
	방어비용	100만	250	250
	면허취소위로금	100만	230	230
	면허정지위로금	1만	160	160
	상해입원일당	2만	1,220	1,460
	질병입원일당	2만	1,340	1,420
합계 보험료			46,070	49,080

4. 보험료 산출기초

1)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① 위험보험료는 사고시 보험료를 지급하는 재원으로 사전에 확정된 예정위험을 산출합니다.
- ② 저축보험료는 만기 또는 해지시 환급금을 지급하는 재원으로 회사에서 정한 예정이율로 부리하여 만기 또는 해지시 지급합니다.

③ 부가보험료는 보험계약시 소요되는 각종비용과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예정이율

이 상품의 예정이율은 연복리 4.0%입니다.

예정이율이란?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을 “예정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3) 예정위험율

(기본계약, 상해1급 기준)

담 보 위 험		예정위험율	
		남자	여자
일반상해	사망위험률	0.000533	0.000237
	80%이상후유장해발생율	0.000057	0.000023
	80%미만후유장해손해율	0.000178	0.000101

예정위험율이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대수의 법칙에 의해 예측한 것을 예정위험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높아지고 낮아지면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4) 예정사업비율

(기준 : 기본계약, 10년만기 / 10년납)

구 분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사업비계
예정사업비지수(%)	107.7	82.8	47.1	83.2

예정사업비율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를 예정사업비율이라 합니다.

예정사업비지수란?

손해보험협회에서 매년 산출한 업계의 평균 사업비 규모(사업비 항목별 업계 평균

을 100으로 설정)와 비교한 지수입니다. 이러한 예정사업비지수는 실제 귀하께서 가입하신 상품의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납입보험료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무배당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6.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해약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3. 보험료비교표의 합계 기준

(상해1급, 남자40세, 10년만기/10년납, 단위 : 원)

경과년	1년	3년	5년	7년	8년	9년	10년
해약환급금	460	281,920	620,170	905,170	965,790	998,000	1,000,000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